무역상무연구
제67권
2015. 8, pp. 209~231.

논문접수일 2015. 07. 28.
심사완료일 2015. 08. 19.
게재확정일 2015. 08. 20.

무역통계 및 실적 차이에 관한 諸문제*

박 광 서** · 박 연 우***

Ⅰ. 서 론
Ⅱ. 무역통계 및 실적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무역통계 및 실적 차이의 유형과 원인
Ⅳ. 무역통계 및 실적 차이에 관한 개선방안
Ⅴ. 결 론

주제어 : 수출실적, 수입실적, 무역실적, 무역통계, 국제수지, BPM6

Ⅰ. 서 론

국가통계는 정부의 정책수립·평가, 연구자의 조사·분석, 기업의 전략수립 등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이다. 무역통계는 국가차원에서 국가별, 상품별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여 무역정책과 관세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차원에서 기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FTA체결의 효과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상대국에서 인용하는 무역통계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혼란을 주기도 한다. 무역통계는 크게는 상품무역통계와 서비스무역통계로 대별할 수 있다. 상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년 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주저자), E-Mail : kspark40@konkuk.ac.kr
***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실장, E-Mail : japan@kita.net

품무역통계는 주로 관세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관세청 발표(통관기준)와 한국은행 발표(국제수지기준) 사이에는 약 US $100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무역통계의 오류는 FTA 협상 및 무역정책 수립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국민 및 다른 나라로부터의 통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오류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관별, 국가별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무역통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발표기관 사이의 무역통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무역통계 및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하고, 발표기관 사이의 통계의 차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무역통계를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역통계 중에서 상품무역통계는 물품의 흐름과 대금의 흐름을 각각 관세청과 한국은행의 자료를 통해서 교차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에 서비스무역통계는 서비스의 특성상 한국은행의 외환수급통계로만 확인될 뿐이기 때문에 상품무역통계에 비해서 교차 확인 가능성 및 체제 등에서 미흡하다. 아울러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에 비해 개념정립부터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품무역통계 및 실적에 한정하여 연구범위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하여 관련 논문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등의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였으며,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등을 위하여 관련 신문기사 등도 참조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무역실적 및 무역통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국내 논문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관에서 시행한 조사 보고서가 몇 개 있을 뿐이다.[1]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통계와 무역실적에 관한 이슈를 종합 정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학계 및 실무계에 무역실적 및 통계의 특징 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1) 통계청,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수시 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보고서”, 통계청, 2012.6 ; 한국무역협회 ·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 “서비스무역통계 집계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2012.12.

Ⅱ. 무역통계 및 실적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무역통계 및 실적 관련 국내외 규칙 개괄

무역통계에 관해서는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청 고시'라 함)」[2]가 직접적인 규정이 되는데, 동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와 통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무역실적에 관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3] 제6절 수출·수입실적(제25조~제30조)이 직접적인 규정이다. 아울러 무역통계에 활용되는 상품분류와 관련해서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4] 한국표준무역분류(SKTC),[5] 한국표준산업분류(KSIC),[6]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분류체계(MTI code)[7] 등이 관련된다.

---

2)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정(1995.12.21., 관세청 고시 제1995-950호), 최종개정(2014.5.20., 제2014-062호)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정(1987.6.30., 상공부고시 제87-17호), 최종개정(2015.5.15., 고시 제2015-95호)

4)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은 WCO(세계관세기구)가 관세징수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세계 공통은 6단위이며 6단위 이하는 자국분류(한국 10단위, 미국 10단위, 일본 9단위, 중국 8단위까지 분류)한 것으로 HSK는 세계공통 6단위에 한국 관세청에서 4단위를 추가한 한국 10단위 분류이다.

5)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 통계청 고시 2009-308호)는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및 비교하기 위하여 동 상품을 그 특성과 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10개 대분류, 67개 중분류 및 262개의 소분류, 1,023개의 세분류, 최종단위인 세세분류 2,970개로 구성되어 있다. SITC(국제표준무역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4)의 분류항목과 일치하며 품목에 관한 해석은 HS 품목해설서에 의한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도와 비교를 위하여 UN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기초하여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ISIC 개정과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됨.

7)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분류체계(MTI COD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슷한 종류의 여러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로서 대분류(MTI 1단위), 중분류(MTI 2단위), 소분류(MTI 3단위), 세분류(MTI 4단위), 세세분류(MTI 6단위)로 품목군을 분류한다.

<표 1> 무역통계 및 실적 관련 국내규칙

구분	세부내역		비 고
관세법령	법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근거법
	시행령	제276조 (통계·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시행규칙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고시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무역통계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25조 (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제26조 (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제27조 (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제28조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제29조 (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신청) 제30조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신청)		무역실적
기타	통계법		통계 기본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		상품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분류체계(MTI)		산업부 분류

자료: 저자 작성

한 나라의 무역통계는 다른 나라 및 세계의 무역통계 등과 비교가 가능해야 활용이 가능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통계 및 실적 관련 규칙 또한 국제규칙과 일치시켜야 바람직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요한 통계 관련 규칙으로는 국제상품무역통계(IMTS),[8] 서비스무역통계 매뉴얼(MSITS), 국제수지 매뉴얼(BPM6),[9][10]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국제표준무역분류(SITC),[11] 국제무역통계(ITS)[12]등이 있다.

8) IMTS: UN이 1970년에 각국이 상품무역통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간한 국제적 지침서로서 1982년, 1998년, 2010년 등 3차례 개정되었다.

9) BPM: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거래 통계 표준화를 위해 국제수지의 표준항목을 체계화 하여 회원국이 이에 따라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지침으로 우리나라는 1998년 1월부터 IMF의 제5판 매뉴얼에 따라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판은 2010년 개정된 BPM6이다.

10) 국제수지(BPM, Balance of Payments)는 일정기간 동안에 일국의 거주자와 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이다.

11) SITC(표준 국제 무역분류)는 국가간 교역되고 있는 상품의 통계와 국가간 비교의 용이성을 확보화기 위해 UN에서 제정한 상품의 무역에 대한 국제분류 시스템으로 HS 6단위를 기준으로 생성한다. 아울러 PC-TAS(Trade Analysis System On Personal Computer)는 UN에서 제공하고 있는 SITC 기준 국가간 무역통계 DB를 말한다.

<표 2> 무역통계 및 실적 관련 국제규칙

약칭	영문명칭 (한글 번역)	발행기관	최종 개정
IMTS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국제상품무역통계; 개념과 정의)	UN통계위원회	2010
MSITS	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통계 매뉴얼)	UN통계위원회	2010
BPM 6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sixth edition 2008 (국제수지(BOP)매뉴얼)	IMF	2010
DTS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Distributive Trade Statistics (유통무역통계 국제 권고)	UN	2008
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국제투자대조표)	IMF	2015
ITS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국제무역통계)	WTO	2014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국제표준산업분류)	UN	2008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4 (국제표준무역분류)	UN	2008
H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WCO	1988

자료: 저자 작성

2. 무역통계 및 실적에 관련 규칙의 주요내용

1)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의 주요내용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13] 무역통계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의 무역거래에 의한 상품의 수출입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다. 무역통계는 국가의 무

12) ITS(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는 WTO에서 매년 11월경 발간하는 통계보고서로서, 전년도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흐름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분석자료 제공한다.

13) 통계법 제3조 (정의)

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UN, WTO,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무역통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여러 정부기관의 경제정책수립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무역통계의 원활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정통계이다.[14] 무역통계는 신고자인 무역업체의 수정·취소 신고에 의하여 연중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2월중에 발표되는 최종 전년도 연말자료는 변경할 수 없다.

무역통계에는 보통무역통계, 특수무역통계,[15] 보조무역통계[16]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통계라고 할 때는 보통무역통계를 말하는데, 보통무역통계는 원칙적으로 1965년 제13차 UN 통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출간된 「국제 무역통계 개념과 원칙(IMTS)」[17]에 따라 작성된다.

무역통계는 관세청 산하의 각 세관, 출장소 및 감시선 등에서 수집되는데 ① 수입물품은 신고수리일, ② 수출물품은 출항일(선적일), ③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은 승인일, ③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 수리일 및 수출신고 수리 후 출항일, ④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일, ⑤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신고일 및 수출신고수리 후 출항일 등을 기준일로 하여 전자방식(EDI 또는 UNIPASS)에 의하여 관세청 주전산기(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 등록되는 자료를 기초로 한다.[18]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는 HSK를 사용하며, 수량은 HS 최종 단위에서만 기재한다. 물품의 중량 및 수량의 표시는 관세율표에 게재된 HSK별 표준 중량·수량 단위를 사용한다.[19]

수출입 금액의 표시는 미국 달러화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화 표시도 가능하며,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을, 수입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한다.[20]

수입신고 금액에 대한 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따르며, 화폐단위의 변환

---

14)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15) 특수무역통계는 보통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수출입화물 통계(물류통계), 환적화물 통계, 중계무역 통계, 운송수단용품 통계, 수입간주물품 통계이다.

16) 보조무역통계는 운송수단별(선박, 항공기 등) 입출항 통계, 여행자 출입국 통계, 그 밖의 관세행정 관련 통계가 포함된다.

17) 1998년 개정: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52, 1998 Rev 2)

18)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8조 (통계 계상 시점)

19) 중량단위: Kg(Kilogrammes), MT(milli-ton)＝1000Kg, 수량단위: CR(Carat), m(Meters), ㎡(Square meters), ㎥(Cubic meters), ℓ(Liters), MW(1,000Kilowatt hours), u(pieces/items, 2u(pairs), 12u (dozens), 1,000u(Thousands of pieces/items), 수량단위가 u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송품장 등에 수량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packs로 되어 있어 개개의 수량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는 packs(u) 단위로 기재

20)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11조 (가격기준)

은 관세청장이 매주 고시하는 환율에 의하여 각국의 화폐를 원화로 환산한 후 원화를 다시 US$로 환산하고 환산된 US$가 수출입 신고 시에 적용한다.

수출입 되는 물품의 거래국가는 수출의 경우는 최종 목적국, 수입의 경우는 원산국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원산국이 우리나라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적출국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21] 여기에서 목적국이란 수출된 물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국가(지역)을 말하고, 원산국이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국가(지역)를 말한다.

2)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무역실적 관련 주요내용

무역실적은 수출입에서 실제로 이룬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문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역실적과 무역통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역통계는 세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통관을 거친 직수출 및 직수입된 경우에만 계상하지만, 무역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입 통관액, 입금액, 가득액,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액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22]

(1) 수출실적의 인정범위·금액·시점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23] ①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 반출 포함)이다. 국내외간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이동이 이루어지는 유상거래이다. ② 수출입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반출 후 외국에서 매각된 것, ⓑ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음을 명시), ⓒ 해외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합작법인 포함)에게 무상 반출하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로서 주무부장관 등이 확인한 물품이다. ③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등이다. ④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24]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도 인정

---

21)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9조 (수입국 및 수출국 분류)
22) 박광서, 무역법규 제2판, 삼영사, 2014.1, pp. 65~70.
2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수출·수입 실적의 인정범위)
24) 대외무역관리규정이 2015.5.18.에 개정되어 ④과 ⑤번의 경우 '외화를'에서 '대금을'으로 변경됨.

된다. ⑤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⑥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표 3> 수출실적 인정 및 무역통계 집계 여부

구 분		인정금액	인정시점	무역통계
유상 직수출 (남북교역 포함)		수출 통관액(FOB)	수출신고수리일	○(보통)
국내공급(간접수출)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		외국환은행 결제액/확인액	결제일	×
수출포장용 골판지공급		외국환은행 결제액/확인액	결제일	×
특정 거래 형태	중계무역	가득액(수출금액－수입금액)	입금일	△(특수)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 입금액		×
	위탁가공물품(외국판매)	가득액(판매액－원자재수출금액－가공임)		×
외국박람회 물품 현지 매각 해외건설 무상반출 후 현지 수출		외국환은행 입금액	입금일	×
원양어로 수출 중 현지경비		외국환은행 확인액	-	×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국내업체에게 인도		외국환은행 입금액	입금일	×
자유무역지역/보세구역에 반입 신고한 물품 공급		외국환은행 입금액	입금일	×
서비스(용역) 수출		외국환은행 입금액	입금일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국환은행 입금액	입금일	×

자료: 저자 작성

수출실적 인정금액[25]은 원칙적으로 수출통관액(FOB)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즉, 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을 공제한 가득액만을 인정한다. ②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다. 단,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을 인정한다. ③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 반출하여 외국현지에서 매각된

2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수출·수입 실적의 인정범위), 제26조 (수출·수입 실적의 인정금액)

것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다. ④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 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이다. 유류비, 원양어선 유지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가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확인되면 수출금액으로 인정된다. ⑤ 용역수출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관련 협회장(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업종별 관광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외국환은행이 입금 확인하면 된다. ⑥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외국환은행이 입금 확인하면 된다. ⑦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실적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이다. ⑧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다.[26]

수출실적의 인정시점[27]은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및 해외건설공사 관련 수출은 수출신고 수리일이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일 또는 당사자 간 대금 결제일이다.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 현지매각 관련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및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국내인도한 경우는 입금일이다.

(2) 수입실적의 인정범위·금액·시점

수입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대외무역법이 인정하는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과 국내외간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이동이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 중 유상거래인 외국인수수입도 인정된다.

<표 4> 수입실적 인정 및 무역통계 집계 여부

구 분	인정금액	인정시점	무역통계
유상 직수입 (남북교역 포함)	수입 통관액 (CIF)	수입신고수리일	○(보통)
특정거래형태 (외국인수수입)	지급액	지급일	×
서비스(용역) 수입	외국환은행 지급액	지금일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지급액	지금일	×

자료: 저자 작성.

26) 대외무역관리규정이 2015.5.18.에 개정되어 ⑧번의 경우 '외화를'에서 '대금을'으로 변경됨.
27)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7조 (수출·수입 실적의 인정시점)

수입실적 인정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액(CIF)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은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수입실적 인정시점은 수입신고 수리일이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인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

3. 무역실적 및 무역통계의 활용

정부차원에서는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수출입 동향을 시의 적절하게 분석하고 공표함으로써 산업활동, 경제정책 수립과 정책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통계는 1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매월 발표하고, 개별 이용자들은 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의 홈페이지를[28]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무역통계 원데이터는 관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익월 1일 산업부에서 수출입동향(잠정치)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고, 익월 15일 관세청에서 확정치를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한다. 아울러 가공된 데이터는 무역수지,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1인당 무역액, 무역결합도, 특화계수, 무역지수, 교역조건지수, 수입자유화율, 외화가득율 등을 비롯하여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선행지수, 무역경기확산지수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 중에서 일부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무역지수(indexes of foreign trade) 수출(입)액의 변동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로 나누어 파악할 있도록 해주는 통계로서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발표한다. 무역지수의 종류에는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단가지수, 수출(입) 물량지수 등이 있다.

교역조건지수(terms of trade index)는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상품의 량을 수치화 한 것으로 순상품교역 조건지수(순교역 조건지수), 소득교역 조건지수(수입능력지수) 등이 있다. 순상품교역 조건지수는 한 나라가 상품 1단위를 수출하여 얼마나 수입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출단가지수(수출가격)를 수입단가지수(수입가격)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만을 나타내고 물량변동을 감안하지 않아 한 나라 전체의 무역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소득교역 조건지수는 가격변동은 물론 물량변동도 함께 반영하여 무역이익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매월 초에 전월의 수출입물가를 조사하여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28)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 데 이용한다. 국내물가에 대하여 선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입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월평균 가격을 조사하는데, 수출물가는 FOB 가격, 수입물가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품목의 경우는 거래관행을 적용한다. 조사대상품목은 개별품목의 수출입액이 모집단 거래액의 1/2,000이상의 거래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서 동종 산업내 상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면서 가급적 품질규격 등이 균일하게 유지되고 가격시계열 유지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2005년 기준 수출 211개 품목, 수입 234개 품목)한다.[29]

무역경기 확산지수는 2013년에 구축하였는데 수출선행지수 등 기존 지표가 무역업체에 경기동향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작성돼 정확성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 전체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기업차원에서는 자사의 실적관리 및 무역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무역의날 포상, 무역금융 또는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신청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전문무역상사 지정신청, 정부지원사업 신청, 무역보험료 산정 등 각종 평가지표로도 사용된다.

Ⅲ. 무역통계 및 실적 차이의 유형과 원인

1. 관세청과 한국은행 통계의 차이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무역통계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상품무역수지 사이에는 년간 US $1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 상술하면, 지난 15년간(2000년~2014년) 평균 수출입실적은 관세청[30] 발표에 따르면 수출 US $3,601억, 수입 US $3,369억으로서 US $232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행 발표[31]에 따르면 수출 US $3,686억, 수입 US $3,358억으로서 US $328억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은행 통계가 관세청 통계보다 수출은 US $85억 더 잡히고, 수입은 US $10억 덜 잡혀서 수지에서 US $96억의 차이가 있었다.

관세청의 무역통계와 한국은행의 상품무역수지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계를 잡는 계상기준과 포괄범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이다. 먼저, 계상기준에서 관

29) 한국은행, 2012. 12월 수출입물가, 2013년 1월 10일 공보 2013-1-9호, p. 7.
30) 한국무역통계(K-stat, www.kita.net).
3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세청의 무역통계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통관기준으로 작성하지만, 한국은행의 무역수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소유권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무역수지는 IMF의 국제수지기준(BPM)에 따라 관세청의 통관기준 실적을 기본으로 하지만 소유권 이전여부를 기준으로 별도의 수지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포괄범위에서 관세청의 무역통계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실적을 각각 FOB와 CIF 기준으로 집계하는 반면에 한국은행의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실적 모두를 FOB기준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집계한 수입금액은 관세청이 집계한 수입금액보다 운임과 보험료 금액만큼 덜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 무역통계는 수출입자가 신고하는 신고가격에 의한 통계이지만, 한국은행 무역수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실제로 입금 또는 지급된 외환수급통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환율 등을 반영할 때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5> 상품수출입 수지 비교

<단위: US백만불>

	국제수지기준(한국은행)			통관기준(관세청)			차이
	수출(FOB)	수입(FOB)	수지(A)	수출(FOB)	수입(CIF)	수지(B)	(A−B)
2000	167,711	151,740	15,971	172,268	160,481	11,786	4,185
2001	145,096	135,020	10,076	150,439	141,098	9,341	735
2002	159,309	144,383	14,926	162,471	152,126	10,344	4,582
2003	191,958	169,664	22,294	193,817	178,827	14,991	7,303
2004	251,729	213,411	38,318	253,845	224,463	29,382	8,936
2005	283,790	252,184	31,606	284,419	261,238	23,180	8,426
2006	326,930	303,186	23,744	325,465	309,383	16,082	7,662
2007	380,345	348,724	31,621	371,489	356,846	14,643	16,978
2008	429,633	419,511	10,122	422,007	435,275	−13,267	23,389
2009	359,077	315,008	44,069	363,534	323,085	40,449	3,620
2010	455,633	414,347	41,286	466,384	425,212	41,172	114
2011	578,881	556,435	22,446	555,214	524,413	30,801	−8,355
2012	590,456	552,675	37,781	547,870	519,584	28,285	9,496
2013	602,261	534,058	68,203	559,632	515,586	44,047	24,156
2014	606,587	527,342	79,245	572,665	525,515	47,150	32,095
15년 평균	368,626	335,846	32,781	360,101	336,875	23,226	9,55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 산업통상자원부과 관세청 실적의 차이

2015년 1월 1일에 발표한 산업부 속보에 따르면[32] 2014년 우리나라 수출은 US $5,731억, 수입은 US $5,257억이었지만, 관세청의 확정실적은 수출 US $5,727억, 수입 US $5,255억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잠정치와 관세청 확정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는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동향의 신속·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수출입통계를 신고수리일 이후에 발생하는 정정 및 취하 등의 반영 없이 단순 합산하여 매월 1일 수출입동향(잠정치) 형태의 속보를 발표하고 있다. 동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를 기초로 매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으로 전체 수출입 실적은 전월말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품목별·지역별 수출입 실적은 전월 20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다만,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 추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토대로 월간 수출액을 추정하여 작성한다.[33]

반면에 관세청은 ① 신고인이 수출입 신고 시 신고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② 기업별 과거 실적 대비 수출입 신고금액이 과다한 경우, ③ 품목 및 기업별로 과거 평균단가와 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오류를 점검한 후 익월 15일에 확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간혹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다.[34]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신고자 잘못 등으로 인해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취소 및 정정 등에 따른 이유가 다수를 차지한다. 신고자는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1개월 이내 선적이 불가능할 경우에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아울러 원화를 달러로 입력한 경우와 같이 입력착오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2년부터 수출입 신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오류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간혹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관세청 노력이 퇴색되기도 한다.[35]

특히, 수출물품은 기업지원 및 수출촉진 차원에서 수출신고 즉시 신고수리하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있으며, 신고수리 후 선적일정 조정, 해외구매자의 주문 취소 등 계약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입에 비해 수출실적 변화가 크게 발생할

32)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5년 수출입 전망”, 2015.1.1.
33) 산업통상자원부 매월 수출입동향 보도자료 .
34) 2011년 12월 수출 수치의 오차가 20억 달러 가량 났다. 한 철강업체가 관세청에 수출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과 달러를 혼동해 10억 원을 10억 달러로 잘못 기재해 차이가 있었다(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29일자 p. 12).
35) 아시아투데이, “못믿을 관세청 통계…화장품 수출 1.6억 달러 오류 4년째 방치”, 2014.8.6.

수 있다.[36] 구조적으로도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 선적하고, 운송인이 적하목록을 통해서 관세청에 출항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와 실제 선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수입신고는 수입신고 시기가 4가지[37]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모두 운송서류 사본을 제출서류로 하고 있어 수출보다는 오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3. 국가별 무역통계의 차이

국가간 수출입 통계는 이론적으로 일국의 수출통계와 상대국의 수입통계가 일치해야 맞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더구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상품가격의 평가방식, 운송기간, 환율 등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복잡해지기도 한다.[38]

<표 6> 무역통계의 국가간 오차 발생원인

구 분	오차 발생원인
정상적 원인	· 수출입금액 집계기준(FOB/CIF)의 차이에 따른 원인 · 제3국 경우에 의한 원인 · 국가별 원산지결정기준 차이에 의한 원인 · 국가별 품목분류 차이에 의한 원인 · 운송기간 장기화에 따른 원인 · 특수거래형태의 통계 포함여부에 따른 원인
非정상적 원인	· 수출입금액 입력 오류에 따른 원인 · 환적/중계무역 시 원산지 변경후 제3국 반송으로 인한 차이 · 저가 수출신고 및 고가 수입신고 등 불법행위에 따른 차이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통계청,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수시 통계품질 진단 연구용역보고서”, 통계청, 2012.6, p. 54.

국가 사이의 무역통계 오차의 원인은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상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국과 수입국의 물품가치 평가를 수출은 FOB, 수입은 CIF로 하기 때문에 수출입간 통계차이는 물품가격(FOB 금액)에 비해 운임・보험료 만큼의 차이(5～10%)가 발생한다. 한편, 국가에 따라서는 FOB, CIF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 일본, EU 등

36) 관세청 보도자료, “지난해 12월 무역흑자 17억 달러 오류”제하 언론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 2012.2.

37) 관세법 제243조～제244조(보세구역 도착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입항전 신고, 출항전 신고)

38) 연합뉴스, “한국-EU 무역통계 정반대 수치.. 뭐가 맞아?”, 2012.1.19.

대부분 국가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FOB, CIF 기준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FAS, Customs Value 기준을, 캐나다는 수출입 모두 FOB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둘째, 제3국을 경유하는 중개 또는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입통계를 원산지 위주로 작성함에 따라 수출입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는 홍콩으로 수출한 것이지만, 중국은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 된다. 이러한 간접무역에 대한 통계조정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Mark-Up 개념[39]과 Control Estimate 개념[40]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 환율이나 운송기간의 따른 시차(time-gap)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원인으로써 수출입 금액의 입력 오류, 환적/중계무역 시 원산지 변경 후 제3국 반송, 저가 수출신고 및 고가 수입신고 등 불법행위에 따른 차이 등을 들 수 있다.[41]

4. 관세청과 개별업체 실적의 차이

수출입 기업들은 자사의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을 한국무역협회장,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수출통관을 거친 물품의 수출입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람회・견본시・영화제 등

39) Mark-up 방식: 홍콩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로 캐나다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홍콩에 수출하는 것으로 무역통계에 계상 되지만, 캐나다는 원산지 위주 수입통계 방식에 의거 홍콩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무역통계조정방식으로 홍콩을 거쳐 간접 수출된 금액만큼 우리나라 수출액에 가산(+)하여 조정하지만 그 금액에는 홍콩에서 캐나다로 수출시 이윤을 붙인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므로, 홍콩에서 이윤을 붙인 금액(Mark-Up)의 비율만큼 당해 금액에 마이너스(-) 하여 정확한 무역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40) Control Estimate 방식: 한국과 B국과의 무역에 있어 한국이 수출국이고 중국이 수입국일 경우 한국의 수출금액과 중국의 수입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무역통계이지만, 한국과 중국간에 직접교역만이 있을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간접교역이 있는 경우에는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한국의 수출금액 + 중국의 간접수입금액 = 중국의 수입금액” 또는 “한국의 수출금액 + 중국의 간접수입금액 < 중국의 수입금액”이 되어야 하며 “한국의 수출금액 + 중국의 간접수입금액 > 중국의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잘못된 통계로 이는 조정(Control)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금액보다는 수입금액이 관세평가나 협정세율의 적용 등을 위해 입증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간접수입금액은 교역에 따른 다른 여러 요소로 인하여 이중 계산될 우려가 많으므로 간접수입금액이 지나치게 크게 계상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41) 통계청,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수시 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보고서”, 통계청, 2012.6, p. 54.

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 반출하는 물품의 현지매각,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 사용분,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으로 국내 공급,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 등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실적확인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무역업체 자사가 집계한 수출입 실적과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받는 실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수출입자가 수출입 신고시 신고서에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가 대다수인데, 관세청에 정정신고를 하면 다음 달에 반영된다. KITA.net(한국무역통계)은 관세청의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수출입신고의 정정 없이 임의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수출은 입금액, 수입은 지급액으로 산정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수출과 수입 실적을 각각 FOB와 CIF 기준 신고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수출과 별도로 간접수출의 경우에는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수출실적에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업체들이 정확한 자사실적의 확인 및 무역의 날 포상신청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증빙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무역통계 및 실적 차이에 관한 개선방안

1. 국내 규칙들 사이의 내용 일치

무역실적과 통계와 관련된 국내의 기본규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청 고시라고 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수출신고 수리일'이지만,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출항일(선적일)'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판매된 경우는 '인계한 시점'이다.[42] 관세청 고시는 2008년에 수출신고 수리 후 정정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해 실제 수출되는 금액보다 과다 계상되고, 월말에 수출신고가 집중되어 세관직원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출항일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43]

42)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8조 (통계 계상시점)

43) 관세청 보도자료, 수출통계 작성기준 출항일로 바꾼다 -관세청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

참고로 UN국제상품무역통계도 무역통계 기록시점이 상품이 일국의 경제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44]

관세청 고시는 무역통계를,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무역실적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양자는 모두 유상수출의 수출실적 인정시점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실제로도 수출신고 수리일 보다는 출항일로 하는 것이 통계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2. 변경된 국제수지 기준(BPM6)과 일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은 국제수지통계 작성기준으로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BPM)을 사용하고 있다. IMF는 2010년 1월에 세계화, 경제환경변화, 금융혁신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BPM 6: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을 공표하였으며, 한국은행도 2014년 3월부터 BPM 6를 적용하여 국제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PBM6의 개정이유는 해외생산 확대, 금융상품의 혁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국민계정통계, 통화금융통계 등 거시경제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특히 글로벌화 이슈와 관련하여 가공무역, 중개무역, 아웃소싱, 다국적기업의 처리 등이 무역과 관련이 된다. 따라서 무역통계와 실적 관련된 국내규정들도 국제수지 기준과 통관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된 BPM6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7> BPM의 경상계정 변경내역

구 분	BPM 5	BPM 6	비고(관련성)
중계무역	서비스 (중계무역)	상품수지 (중계무역 순수출)	중계무역
가공용 재화	상품 수출입	상품 수출입에서 제외	위탁가공무역
임가공료	상품수지의 일부	임가공서비스로 계상	
무통관 수출입 (현지 및 제3국)	계상 안 함	상품수출입 계상	외국인도수출 /인수수입
우편 및 배달	통신 서비스	운송 서비스	
지적재산권 매매	자본수지	사업서비스 -연구개발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표의 이해와 최근동향”, 2012, p. 27을 활용하여 가공.

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2007.11.15.

44) UN 국제 상품무역통계 제1장 제1.8조(기록시점)

1) 중계무역

중계무역(merchanting)은 거래상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거래되지 않고, 제3국이 개입하여 물품을 원형 그대로 또는 보세공장에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무통관 거래형태이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중계무역은 화주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적으로 통관한 경우라도 보통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않고 특수무역통계로 별도로 집계한다.[45]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을 공제한 가득액을 개별기업의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종전의 국제수지기준인 BPM5에서는 중계무역 수출입 차액을 서비스수지(중계무역 및 무역관련 서비스)로 계상하였다. 문제는 중계무역 거래는 소유권이 변동하는 거래이므로 수출(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국제수지기준에 부합하고, 재화를 수출(수입)하는 국가는 자국의 수출(수입)로 인식하는 반면, 중계무역국가는 수출로 인식하지 않고 서비스로 계상함에 따라 전 세계의 통합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BPM6에서는 상품구입은 마이너스(－) 수출로, 상품판매는 플러스(＋) 수출로 인식하며 그 차액을 중계무역거래의 순수출로 계상하였다. 단, 금액은 본선인도가격(FOB)이 아닌 거래가격을 사용한다.[46]

생각건대,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관점에서 중계무역자는 수출자와 수입자를 겸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국에 위치해 있는 무역업자에게는 순수출로 계상해 주는 것이 옳다. 다만,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에는 「수출(FOB)－수입(CIF)」의 가득액을 입금기준으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에 따라 실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입금실적과 무관하게 중계무역으로써 수출신고와 수입신고 시에 무역통계와 개별기업의 무역실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위탁가공무역

가공무역(goods for processing)은 가공임 지급을 조건으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이다. 위탁가공을 위해 나가는 원재료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가공 후 완제품을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외국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완제품은 임가공 국가의 수출실적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는 제외된다. 해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45)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15조(중계무역 통계), 제3조(무역통계의 종류)

46) 한국은행,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편제기준(BPM6)의 주요 개정내용,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2011, 1분기, pp. 77~78.

에 현지기업 및 투자대상국의 수출실적으로 잡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과대 계상될 여지는 없다.

<표 8> 위탁가공무역의 BPM 변경내역

BPM 5	BPM 6
· 가공용 재화 수출입만 수출입으로 계상	· 가공용 재화 수출입: 수출입에서 제외 · 현지 또는 제3국 원자재 수입시: 상품수입으로 계상 · 현지 또는 제3국 완제품 수출시: 상품수출로 계상 · 임가공료 지급: 임가공서비스 지급으로 계상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표의 이해와 최근동향, 2012, p. 28.

BPM5에 따르면 가공용 재화의 수출입만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임가공만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지만 예외로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자재를 수출하여 B국에서 가공하여 완성품을 한국, 중국,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원자재를 한국의 가공용 재화 수출로 계상하고,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완성품 수출을 한국의 가공용 재화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BPM6에서는 자국의 원자재를 가지고 해외에서 임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완성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한국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보낸 가공용 원재료는 국제수지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B국에 지급한 임가공료는 서비스 지급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가공 후 본국으로 돌아 온 상품은 수입에서 제외하고 중국과 미국에서 판매된 완성품은 한국의 일반상품 수출로 계상한다. 이를 위해 상품수지 내의 가공용 재화를 삭제하고 서비스수지 내의 임가공서비스(manufacturing service)를 신설하였다.[47] 따라서 변경된 BPM6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9>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현행 규정	개정(안)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제1항 제1호	영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 실적을 포함한다.)	영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단, 위탁가공무역에 따른 원재료 수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제1항 제2호 단서	(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자료: 저자 작성.

47) 한국은행, 전게보고서, p. 77.

3) 무통관 수출입

무통관 수출입에는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통과화물 등이 관련된다.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이고, 외국인수수입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을 외국에서 인수하는 경우이다.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관세청 수출입통계에는 계상되지 않지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 입금액과 지급액이 개별기업의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으로 인정된다.

통과화물(환적화물)은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외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만이나 보세구역에 일시 양륙한 후 적재하거나 양륙하지 않고 다른 운송수단에 이적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통계이다.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통계에 계상되지 않으며 특수무역통계로 잡고 있다. 환적화물은 화주가 외국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항일 및 출항일에 계상한다.[48]

BPM5에서는 계상하지 않았지만, BPM6에서는 무통관수출입을 상품수출입으로 계상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서 수출입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무역통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청 고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 론

한 국가의 무역통계는 무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 및 국제기구의 무역통계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전략수립 등에 기여를 한다. 우리나라의 상품무역통계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통계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통계 및 실적 차이의 유형과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역실적과 무역통계에 관한 국내 규정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청 고시가 있고, 국제규칙으로는 국제상품무역통계(IMTS), 서비스무역통계매뉴얼(MSITS), 국제수지매뉴얼(BPM6)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 규칙들 사이에 불일치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관련 규칙들이 외국의 규칙들과 일치

48)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14조(환적화물통계), 제3조(무역통계의 종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통계 및 무역실적에서 차이가 나는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첫째, 관세청과 한국은행 통계 사이에는 연간 US $1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통계를 잡는 계상기준과 포괄범위 등의 차이를 그 원인으로 한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의 발표실적 차이가 다소간에 있는데, 그 이유는 발표시점과 발표목적의 차이 때문이다. 셋째, 국가별 무역통계가 최근에 FTA 체결의 확대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상적인 이유와 비정상적인 이유로 구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관세청) 발표통계와 개별업체에서 집계한 실적의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업체가 신고 시 통관부호 미기재로 인하였지만 Local L/C 등 간접수출실적 집계 등의 오류에 기인한 바가 컸다.

무역통계 및 실적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규칙간의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키는데서 출발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숫자를 다루는 것이므로 신고자인 무역업체로부터 통계를 집계하고 운용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청고시의 수출실적 인정시점을 출항일(선적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국제수지매뉴얼(BPM6)에 따라서 국내 무역통계 및 실적에 관한 규칙을 수정하여 한국은행의 국제수기 기준과 관세청의 통계기준 등을 일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상품무역과 관련된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무통관수출(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 수입, 통과화물) 등에 관한 규정을 BPM6 변경내역을 반영한 한국은행 무역수지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무역통계 및 실적에 관한 규칙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다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규칙 못지않게 관련자들의 정성과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관세청,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관세청 보도자료, 수출통계 작성기준 출항일로 바꾼다, 2007.11.15.
_____, 제2차 한국・캐나다 무역통계 조정 회의 개최, 2003.11.22.
_____, “지난해 12월 무역흑자 17억 달러 오류”제하 언론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 2012.2.
박광서, 무역법규 제2판, 탑북스, 2014.2.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2015.3.
통계청,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수시 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보고서”, 통계청, 2012.6.
한국무역협회・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 “서비스무역통계 집계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2012.12.
한국은행,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의 이해, 2009.
_____,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편제기준(BPM6)의 주요 개정내용,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2011, 1분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서비스무역통계 매뉴얼, 2004.12.
IMF,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6th Ed.,(BPM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roduction, 2009.
UN, IMTS(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1.

관세무역개발원	www.kctdi.or.kr
관세청	www.customs.go.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통계청	www.kostat.go.kr
한국무역협회(K-stat)	www.kita.net
한국은행	www.bok.or.kr
국제통화기금(IMF)	www.imf.org
UN통계위원회	http://unstats.un.org/unsd/default.htm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of Korea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Kwang-So PARK · Youn-Woo PARK

The accurate national trade statistics can show the real nation's trade situation, and contribute to setting up the national's trade plans and corporate's strategies. This study researches the differences between trade statistics and actual trade record among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to solve the problems.

There are 4 types' differences among the trade statistics as follows; First,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 Customs Service and Bank of Korea by yearly US$9.6billions because of standard and boundary of trade statistics. Second,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Customs Service because of the time and purpose of trade statistics release. Third,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ounterpart countries because of standard of trade statistics, intermediate countries and rules of origin. Lastly,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nation's statistics and corporate record because of typing errors and indirect export record.

The fundamental improvement plans are Korea statistics rules like Korea Foreign Trade Rules and Korea Custom Rules, need to coincide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like IMTS, MSITS, BPM6 etc. Especially the rules of statistics related to intermediary trade, processing trade and transit trade have to revise with new BPM6 rules. In addition, a reasonable care of trade statistics from accumulation to utilization of trade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han statistical regulation or system, so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exporters, importers, government official pay attention the statistics and cooperate together.

Keywords : Trade Statistics, Actual Export Record, Actual Import Record, Korea Trade Statistics Difference, the Reasons of Trade Statistics Differences, Balance of Payment, BPM6